

# 정 관

- 제정 2006. 04. 11 민법 제32조, 제4조
- 개정 2006. 06. 15 보건복지부 허가 제318-1호
- 2006. 10. 26 보건복지부 허가 제318-2호
- 2008. 05. 21 보건복지가족부 허가 제318-3호
- 2008. 08. 11 보건복지가족부 허가 제318-4호
- 2009. 12. 07 보건복지가족부 허가 제318-5호
- 2010. 05. 28 보건복지부 허가 제318-6호
- 2011. 12. 21 보건복지부 허가 제318-7호
- 2012. 07. 17 보건복지부 허가 제318-8호
- 2012. 12. 27 보건복지부 허가 제318-9호
- 2013. 12. 24 보건복지부 허가 제318-10호
- 2014. 04. 21 보건복지부 허가 제318-11호
- 2016. 01. 20 보건복지부 허가 제318-12호
- 2017. 01. 23 보건복지부 허가 제318-13호
- 2017. 07. 19 보건복지부 허가 제318-14호
- 2019. 05. 14 보건복지부 허가 제318-15호
- 2024. 04. 17 보건복지부 허가 제318-16호

사단법인 **한국척수장애인협회**

# 제1장 총 칙

**제1조(명칭)** 본회의 명칭은“사단법인 한국척수장애인협회”(이하“본회”라 한다.)라 한다.

**제2조(목적)** 본회는 척수장애인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대변함으로써, 척수 장애인들이 동등한 기회와 권리를 가진 사회의 주류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보건복지서비스를 지원하고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척수 장애인의 삶의 질을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
## 제3조(사무소의 소재지)

- ① 본회의 주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.
- ② 이사회의 결의에 의해서 분사무소로 시·도에는 협회를 설치할 수 있고, 시·군·구에는 지회를 설치할 수 있다.

**제4조(사업)**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.

1. 척수장애인의 권익옹호사업
2. 척수장애인의 재활지원사업 및 복지 시설 운영사업
3. 척수장애인의 관련학술연구지원 및 간행물 발행사업
4. 척수장애인 문화, 체육 진흥사업(문화제 및 예술 활동, 생활체육 등)
5. 척수 장애인을 위한 정보통신 센터의 운영 및 지원
6. 척수장애인 교육 및 장학사업
7. 기타 본회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수익사업
8. 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 설치운영사업
9.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
10. 인권 및 장애인식개선교육사업
11. 장애인복지관설치운영사업
12. 국제개발협력사업
13. 장애인가족지원사업

**제4조의2(수익사업의 종류)** 제4조 제7호의 수익사업은 다음 각 호 품목을 취급하는 사업을 말한다.

1. 가구
2. 인쇄
3. 피복
4. 씨씨티비
5. 기타 회장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하는 품목
6. 복사용지 제조 및 판매
7. 봉투제작
8. DM발송
9. LED 제조 및 판매
10. 정보통신공사업
11. 폐기물처리사업
12. 전산업무(소프트웨어개발)
13. 도로전광표지판 제조 및 설치, 판매

- 제4조의3(수익사업단의 구성 등)** ① 회장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수익사업단을 구성할 수 있다.  
 ② 본 회의 수익사업단은 사회적 기업으로 운영할 수 있다.  
 ③ 본 회의 수익사업단에는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.

## 제2장 회 원

**제5조(회원의 구분)** 본회의 회원은 정회원, 준회원, 명예회원으로 구분한다.

- 제6조(회원의 자격)** ① 정회원은 척수장애인으로서 본회의 설립목적과 취지에 적극 찬동하고 소정의 입회 절차를 마친 자로 한다.  
 ② 준회원은 정회원의 가족 및 각급기관, 단체, 기업 등의 장 또는 사회 저명인사로서 본회의 사업취지에 찬동하고 정신적, 육체적 또는 경제적으로 후원하며 소정의 입회절차를 마친 자로 한다.  
 ③ 명예회원은 본회의 사업취지에 찬동하고 본회의 목적사업에 정신적, 육체적, 경제적으로 적극 지원하는 사람으로서 이사회의 의결로 위촉한 자로 한다.

- 제7조(회원의 권리)** ① 본회의 정회원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갖고 각 협회 회원총회의 발언권, 의결권을 갖는다.  
 ② 본회의 정회원, 준회원, 명예회원은 본회가 주관하는 모든 행사에 우선 참여 할 수 있다.  
 ③ <삭제>

- 제8조(회원의 의무)** ① 본회의 회원은 정관 및 제 규정, 각급회의의 의결사항을 준수 하여야 한다.  
 ② 정회원은 입회비, 년 회비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.  
 ③ 준회원과 명예회원은 본회 발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.

- 제9조(회원의 탈퇴 및 제명)** ① 회원은 본회에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.  
 ② 회원이 본회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 한 경우 또는 1년 이상 회원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 할 수 있다.  
 ③ 본회의 회원이 탈퇴하거나 제명 또는 사망으로 회원의 자격을 상실 하였을 때에는 잔여기간에 비례하여 이미 납부한 회비 및 기타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.

## 제3장 임 원

**제10조(임원의 종류 및 정수)** 본회는 제1조와 제4조의 목적사업을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의 임원을 둔다.

1. 회장 : 1인
2. 부회장 : 수석부회장과 3인 이내의 일반부회장을 둘 수 있다.
3. <삭제>
4. 이사 : 7인 이상 15인 이내(회장, 부회장 포함한다.)

5. <삭제>
6. 감사 : 2인 이하로 정한다.
7. 직원 대표 1인 이상을 반드시 이사로 선임하며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이사로 선임한다.

**제11조(자격)** 본회의 임원은 다음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선임한다.

1. 본회 설립당시의 발기인
2. 본회에 상당한 재산을 기부한 정회원
3. <삭제>
4. 본회 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거나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정회원으로서는 이사회가 추천한 자
5. 감사 중 1인 이상은 공인 회계사, 세무사,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로 한다.(단 준회원 또는 명예 회원도 가능하다)

**제12조(임원의 선출)** ① 본회의 회장과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.(단, 회장은 본회의 이사 중에서 선출한다.)

- ② 선출된 회장은 이사회를 구성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- ③ 부회장은 회장이 필요에 따라 이사 중에서 이사회 동의 얻어 선임한다.
- ④ 임기가 만료된 임원의 후임자는 임기만료 1개월 이전에 선임하여야 한다. 다만, 궐위된 임원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이사회 동의로 선임한다.
- ⑤ <삭제>
- ⑥ 천재지변 등 특별한 사유로 차기 임원을 선출하지 못한 경우 선출 시까지 전임자가 그 임무를 계속 수행한다.
- ⑦ 총회에서 승인된 이사는 3주 이내에 관할법원에 등기를 필한 후 주무관청에 통보 하여야 한다.
- ⑧ 회장의 선출 방식은 선거관리 위원회의 규정을 준수한다.

**제13조(임원의 임기)** ① 회장과 이사의 임기는 4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.

- ② 임원이 임기 중 궐위된 때에는 2개월 이내에 보선하여야 하고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.
- ③ 임원은 임기만료 후라도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한다.

**제14조(임원의 직무)** ①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, 본회의 제반 사무를 총괄하며 총회 및 이사회 의 의장이 된다.

-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여 회무를 관장하고, 회장 유고시는 수석부회장, 일반부회장(연장자)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.
- ③ 이사는 회장, 부회장을 포함하여 이사회를 구성하고, 이사회 직능에 속하는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.
- ④ <삭제>

**제15조(임원의 결격사유)**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.

1. 미성년자
2.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
3.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

4.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것에 의해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
5. 협회의 제명 처분을 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
6. 대한민국 국적을 갖지 아니한 자

**제16조(감사의 직무)** 감사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본회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
2. 총회 및 이사회에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
3.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 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할 때에는 이사회,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게 보고 하는 일
4.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에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추인을 받아 결정한다.
5. 본회의 재산상황 또는 총회, 이사회에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의견을 진술하는 일

**제17조(상임부회장)** ① 본회의 목적사업을 위해 상임이사를 둘 수 있다.

- ② 상임이사는 이사 중에서 이사회에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선임한다.
- ③ 상임이사는 상근하며 회장의 지시를 받아 법인 사무를 총괄하고 분사무소 및 회원의 관리를 한다.

**제18조(임원의 보수)** ① 본회의 임원은 명예직으로서 무보수를 원칙으로 한다.

- ② 상임이사에게는 이사회에의 의결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수를 지급 할 수 있다.

## 제4장 총 회

**제19조(총회의 구성)** 총회는 본회의 최고의결기관이며 대의원으로 구성한다.

- ① 대의원은 본회의 이사와 시·도 협회별 당연직대의원 및 일반대의원으로 한다.
- ② 시·도 협회별 당연직대의원은 2명으로 하되, 1명은 시·도 협회장으로 하고, 다른 1명은 시·도 협회의 운영위원 중에서 추천된 자로 한다.
- ③ 시·도 협회별 일반대의원은 각 시·도 협회장이 추천한 자로 하되, 그 수는 아래와 같다.
  - 50명 이상, 100명 미만 : 1명
  - 100명 이상, 200명 미만 : 2명
  - 200명 이상, 500명 미만 : 3명
  - 500명 이상, 1,000명 미만 : 4명
  - 1000명 이상 : 5명
- ④ 모든 대의원은 총회 공고 전에 사전등록 되어야 한다.

**제20조(총회의 구분과 소집)**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,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.

- ②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소집하며,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.
- ③ 총회소집은 회장이 회의안건·일시·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전 까지 통지하여야한다.

**제21조(총회소집의 특례)** ① 회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  
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한다.

1. <삭제>

2. 제16조 제3항,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

3. 재적대의원 3분의 2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

②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총회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  
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.

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는 출석이사 중 최 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.

**제22조(총회의 의결사항)**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.

①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

② 법인의 합병 및 해산에 관한 사항

③ 임원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(단, 해임에 관해서는 다음의 각 호와 같이 한다.

1. 총회는 임원에 대하여 부분적 또는 전체적으로 해임을 의결할 수 있다. 다만, 그 임원이 취  
임한 날로부터 만 1년이 경과되어야 한다.

2. 해임안은 재적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이를 결의한다.

3. 해임안이 결의되었을 때에는 당해임원은 즉시 해임된다.

④ 사업계획 및 예산결산 승인의 관한 사항

⑤ 회비에 관한 사항

⑥ 기타 총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

## 제5장 이사회

**제23조(이사회 구성)** 이사회는 회장과 이사로 구성한다.

**제24조(이사회회의 소집)**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한다.

② 정기이사회는 연4회 개최하고 임시이사회는 감사 또는 이사의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 
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.

③ 회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7일전까지 이사 및 감사에게 회의의 목적과  
안건, 개최일시 및 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. 다만, 긴급 하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 
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
**제25조(이사회회의 의결사항)**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·의결한다.

1. 제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

2. 사업계획 및 예산·결산에 관한 사항

3. 총회 개최에 관한 사항

4.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한 사항

5. 기타 총회에서 위임 받은 사항

6. 기타 본회의 운영상 필요한 사항

**제26조 <삭제>**

**제27조(의결제척사유)** 이사회 구성원 또는 대의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.

1. 임원선임 및 해임에 있어서 자신에 관한 사항
2.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 임원 자신이 법인과 직접 관계되는 사항

**제28조(서면결의 금지)** 원칙적으로 이사회 의결은 서면결의에 의할 수 없다.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경미한 사항은 서면으로 의결 할 수 있고 그 사항은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
**제29조(명예회장, 고문, 자문위원 및 써포터즈)** ① 본회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회장은 명예회장, 고문, 자문위원 및 써포터즈를 둘 수 있다.

- ② 명예회장, 고문 및 자문위원의 직무와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.
- ③ 써포터즈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.

**제30조(정족수)** 본회의 각급회의는 본 정관에서 특별히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구성원의 과반수의 참석과, 참석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,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. 다만, 한 번의 재투표를 할 수 있다.

**제31조(소집)** 본회의 총회와 이사회는 회의 개최 7일전까지 회의일시, 장소, 회의 목적 및 안건을 명시하여 구성원에게 회장이 통지한다.

**제32조(회의록)** 본회의 모든 회의는 기록을 하여야 하고, 이를 위하여 의장은 간사를 선임할 수 있다.

## 제6장 재산 및 회계

**제33조(재산의 구분)** ① 본회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.

②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산으로 그 목록은 별지 1과 같으며, 그 이외의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.

1. 기본재산 목록에 기재된 재산
2. 본회가 소유한 부동산
3. 본회 목적사업을 위한 적립금
4. 이사회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 기본재산에 편입한 재산

**제34조(재산의 관리)** ① 본회의 재산은 이를 처분하지 못한다. 다만, 부득이한 사유로 이를 매각, 양도, 교환, 기타의 방법으로 처분하고자 하거나, 담보로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.

② 본회가 매수, 기부, 후원 및 기타 등의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본회의 재산으로 편입조치 하여야 한다.

③ 수익금은 회원에게 배분하지 않으며 목적사업에 재투자하거나 사업확대, 안정화를 위해 별도로 적립할 수 있다.

**제35조(재원)** 본회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재원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.

1. 회비
2.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
3. 각종 기부금
4. 기본재산으로부터 생기는 과실금
5. 기타 수입
6. 총회 결의로 외부단체의 출자나 용자를 받을수 있다.

**제35조의 2(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)** 회장은 당해연도의 연간 기부금 모금액과 활용실적을 다음 연도의 3월말까지 본회의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.

**제36조(예산편성 및 결산) ① <삭제>**

② <삭제>

③ 사업계획 및 예산안과 사업실적 및 결산내용은 본회의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이사회 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
**제37조(회계 및 직무감사)** 감사는 회계 및 직무감사를 연1회 실시하여야 한다.

**제38조 <삭제>**

**제39조(차입금)** 법인이 예산외의 채무부담이나 자금의 차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 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.

**제40조(회계연도)** 본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.

## 제7장 사무처

**제41조(사무처) ①** 회장의 지시를 받아 본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사무처를 둔다.

② 사무처에 사무총장을 두되, 사무총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의 명을 받아 사무를 관리하며 사무처 및 소속기관의 업무를 지휘, 감독 한다.

③ 사무총장은 이사회 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임명하고, 사무처 직원의 임면은 사무총장의 제청에 의하여 회장이 임명한다.

④ 사무처의 조직, 운영과 직원의 보수 및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하되 이사회 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**제42조 <삭제>**

**제43조(시·도협회) ①** 본회는 정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, 광역시 및 각도에 시·도 협회를 둘 수 있다.

② 시·도 협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하되 이사회 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

## 제8장 보 칙

**제44조(해산 및 합병)** 본회는 영구존속을 원칙으로 하나 부득이한 경우에 해산하거나, 다른 법인과 합병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 구성원의 4분의 3이상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.

**제45조(정관개정)** 본회의 정관개정은 재적대의원 3분의 2이상 찬성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.

**제46조(잔여재산의 처분)** 본회가 해산할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국가,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되도록 한다.

**제47조(업무보고)** 익년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와 당해연도 사업실적서 및 수지 결산서는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재산목록과 업무현황 및 감사결과 보고서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.

**제48조(준용규정)**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보건복지부 및 그 소속 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.

**제49조(규칙제정)** 이 정관이 정한 것 외에 본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.

## 부 칙

**제1조(시행일)**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.

### 부 칙 <2006. 6. 15.>

**제1조(시행일)**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.

### 부 칙 <2006. 10. 26.>

**제1조(시행일)**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.

### 부 칙 <2008. 5. 21.>

**제1조(시행일)**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.

### 부 칙 <2008. 8. 11.>

**제1조(시행일)**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.

### 부 칙 <2009. 12. 7.>

**제1조(시행일)**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.

**부 칙 <2010. 5. 28.>**

제1조(시행일)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.

**부 칙 <2011. 12. 21.>**

제1조(시행일)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.

**부 칙 <2012. 7. 18.>**

제1조(시행일)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.

**부 칙 <2012. 12. 27.>**

제1조(시행일)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.

**부 칙 <2013. 12. 24.>**

제1조(시행일)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.

**부 칙 <2014. 4. 21.>**

제1조(시행일)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.

**부 칙 <2016. 1. 20.>**

제1조(시행일)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임원의 임기에 관한 적용례) 제13조의 개정규정은 이 정관 시행 후 최초로 선출된 회장과 이사 및 감사부터 적용한다.

**부 칙 <2017. 7. 19.>**

제1조(시행일)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.

**부 칙 <2019. 5. 14.>**

제1조(시행일)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.

**부 칙 <2024. 4. 17.>**

제1조(시행일)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.

사단법인 한국척수장애인협회장 정진완 ①

### 한국척수장애인협회 재산목록

총 계	166,010,001원			재 산	166,010,001 원	
				운영자산 (잔고증명)	75,350,001 원	
기본 재산	소 재 지	자산 분류	면적(m <sup>2</sup> )	평 가 액(원)	출연자	비 고
	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22, 6층 4호(이룸센터)	임 대 보증금	403.3	42,700,000		
		현 금		75,350,001		
		동 산 (기계자산)		47,960,000		공업용 미싱, 인쇄기 등
	소 계				166,010,001	